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6일(수)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2.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
|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 2 |
| 2.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
| 3.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 5 |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5 |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법안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14시07분)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라 경호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는 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근 위원 (손을 듭)

○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윤용근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누가 실효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억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믿고 의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국회는 계속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호법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지만 그 배경에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후속 법안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국민의 우려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까지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불안을 대변하며 반대해 온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마다 그 문제를 짚고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피해자보호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이번 후속 법안 역시 그 기준에서 충실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김미애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반대하세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0초 정도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세요.

○김미애 위원 방금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사법체계를 78년여 만에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법경찰관만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면서, 딱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허겁지겁 이제서야, 축조심사하는 숙려기간마저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 불성실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라도 했어야지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무너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숙고해 보자, 국민들 우려를 들어서 다시 논의하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걸로 하고, 축조심사는 먼저 의결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6인 중 찬성 16인, 반대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5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10월 29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30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므로 우선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의결하되 추후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명시하였다는 점 알려 드리며,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다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4시17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국정감사계획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의 요청을 한 국방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72개를 포함한 총 273개 기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18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제안설명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위원(27인)

김기웅 김미애 김민전 김성희 김승수 김 윤 김준형 김태규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박정현 윤용근 윤종오 이상희 이정현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정점식 천준호 천하람 최수진 최은석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관 장석립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서미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2026. 9. 11.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8)

8월 26일 회부됨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 8. 27. 이광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20870)

8월 2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2)

이상 2건 8월 3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62)

9월 1일 회부됨

2027년도 예산안

(2026.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2)

9월 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4.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05)

9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71)

이상 4건 9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1)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33)

9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7년도 예산안

(2026.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2)

9월 4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청원 회부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관한 청원

(2026. 8. 27. 김준서 외 50,4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8)

8월 28일 회부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

(2026. 9. 6. 김준서 외 50,6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43)

9월 7일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6년 재정 관련 자료

(2026. 9. 3.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7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2026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2026. 9. 3.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6. 9. 3.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이상 2건 9월 7일 송부됨

임시회의록